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48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김남근 · 강준현 · 김문수  
김승원 · 김 윤 · 김현정  
남인순 · 민병덕 · 박정현  
박홍배 · 손명수 · 송재봉  
염태영 · 오세희 · 이강일  
이기현 · 이용우 · 이주희  
진성준 · 허 영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9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사업자·사업자단체”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p> <p>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 략)</p> <p><u>&lt;신 설&gt;</u></p>	<p>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p> <p>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p> <p>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가 제39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 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 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 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p>

② (생략)

제34조(과징금)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③ ~ ⑧ (생략)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9항 및 제11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사업자단체-----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